

第262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8 號

國會事務處

2006年12月8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경과보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20.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30.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례 반환 촉구 결의안
31.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32.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3.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4.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5.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附議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경과보고	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 · 김재원 · 김재경 · 심재철 · 안상수 · 박재완 · 황우여 · 신학용 · 나경원 · 우윤근 · 고조흥 · 임태희 · 이상경 · 서상기 · 박명광 · 박승환 · 김충환 · 신상진 · 이계경 의원 발의)	4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 · 강기정 · 김동철 · 강창일 · 염동연 · 류근찬 · 박기춘 · 우제항 · 최규식 · 원혜영 의원 발의)	5
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11.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8
13.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8
14.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황우여 · 이해봉 · 안상수 · 권오을 · 엄호성 · 김태환 ·곽성문 · 이시중 · 신상진 의원 발의)	8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권오을 · 남경필 · 윤두환 · 곽성문 · 김태환 · 배일도 · 이명규 · 안명옥 · 신상진 의원 발의)	8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0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0
19.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최철국 · 김태년 · 곽성문 · 한병도 · 김태홍 · 이상열 · 김교홍 · 오영식 · 이광재 · 지병문 · 배기선 · 서혜석 · 이경숙 의원 발의)	10
20.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
24.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 · 안명옥 · 고경화 · 이경제 · 정형근 · 김춘진 · 신상진 · 안홍준 · 유기준 · 김석준 의원 발의)	12
2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배일도 · 박상돈 · 김종률 · 고진화 · 한선교 · 심재철 · 장복심 · 조정식 · 제종길 · 이목희 · 김형주 의원 발의)	13
2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7.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9.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
30.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례 반환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6
31.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7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
32.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33.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34.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35.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

(14시18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경과보고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조일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일현 의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후보자 이용섭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한 주요 내용과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 수행 역량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과 시장경제 원리에 순응하는 공급확대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새로운 주택분양 방안, 조세부담 경감, 택지조성원가의 세부공개, 부동산 버블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초 변화는 없을 것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규제정책과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보상금 세제 혜택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OC 건설 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BTL 또는 민간 제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수요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SOC 예산 증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요량 과다 예측으로 인한 국고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물류·철도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연대나 택시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화물 운송 종사자 등과의 협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의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며, 호남고속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시행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철도의 해외 진출에 대하여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다단계 문제에 대한 엄단 의지 여부와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로 인하여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청렴·투명 시스템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재직할 당시의 반FTA 시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책임 여부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 건교부 산하기관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 홍수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우선 이용섭 후보자는 전직인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임명 시에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걸쳐서 검증된 바도 있고 해서 공직자로서 일신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 등 건교부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교통분야의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특히 이전 공직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을 주장하던 후보자의 그간의 견해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등 건교부장관으로서의 부정적 의견이 일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조세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은 비교적 갖추고 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4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 및 제5항, 제7항~제13항, 제15항~제29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정두언·김재원·김재경·심재철·안상수·박재완·황우여·신학용·나경원·우윤근·고조홍·임태희·이상경·서상기·박명광·박승환·김충환·신상진·이계경 의원 발의)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두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두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동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시·도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관계 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안 계시네요. 배일도 의원 이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픈 기억이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양형

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강기정·김동철·강창일·염동연·류근찬·박기춘·우제항·최규식·원혜영 의원 발의)

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5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형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형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국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감독권자에서 보고토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사와 감독권자의 보고를 병행하여 사업 추진 결과의 명확한 진단과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과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증수단으로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성 및 권한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인증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확인권을 인정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심사보고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오영식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법안의 일부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2개 법안 모두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 시 발명 및 고안의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청구범위를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출원 후 1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상호간의 변경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분쟁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표등록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상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다가?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상

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3.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4.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황우여·이해봉·안상수·권오을·엄호성·김태환·곽성문·이시종·신상진 의원 발의)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권오을·남경필·윤두환·곽성문·김태환·배일도·이명규·안명옥·신상진 의원 발의)

(14시5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이명규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둘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임차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교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운성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승강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추가하여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사고조사관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공고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로 공고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대량과괴무기 등의 확산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하여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열세 가지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탈퇴의 예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조합 합병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하여 협의절차를 구체화하며,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불명확하게

시행령에 위임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 요건과 재단 업무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원 해임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승
 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6인, 기권 5인으로서 중
 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
 업자원위원장 제출)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9.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최철국·김태년·곽성
 문·한병도·김태홍·이상열·김교홍·오영
 식·이광재·지병문·배기선·서혜석·이경
 숙 의원 발의)

20.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0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
 항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전
 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우제항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우제항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경기도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
 원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는 김용갑 의원, 김기현 의원, 이병석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
 들이 지역난방을 채택하는 경우에 도시가스회사
 가 취사용 및 지역난방연료용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
 택권 보호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
 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둘째, 현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

급함에 있어 온도 및 압력의 차이로 인한 가스의 부피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가스사용량을 측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량 및 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온도 및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가스의 부피 변화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조정식 의원과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며,

둘째,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지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있는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행법상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지원의 목적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정 지원의 방식을 보조에서 출연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보험 중 선물환 방식에 의한 환 변동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출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자율변동보험의 운용에 있어서 수지균형 유지 의무가 증장기적으로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등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산근로자가 광산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벌에 처하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 위반 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태풍·폭설 등이 발생한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법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안명옥·고경화·이경재·정형근·김춘진·신상진·안홍준·유기준·김석준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2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배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3건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과 장복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공원 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공원별로 관리하도록 통합 관리 방침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 공원 내에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생태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게 공원구역 내에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권을 부여하였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절차를 거쳐서 해당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훼손 방지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공사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분리발주 시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에 대한 결격사유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처벌조항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촉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로부터 인간에 오염되는 감염을 철저히 막고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는바, 현행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폐기물의 배출원을 감염성 환자·동물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인체 위해 가능성의 예시로서 “감염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꼼꼼히 심사해 주신 법사위의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법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배일도·박상돈·김종률·고진화·한선교·심재철·장복심·조정식·제종길·이목희·김형주 의원 발의)

2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한선교**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로부터 하역금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오염도가 개선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정 해제 시 대기질 악화의 우려가 있어 해제 시 대기환경관리계획의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료의 징수·사용,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변경 절차를 일부 변경하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개정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선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27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8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포의 취업 절차와 사용자의 고용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거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절차 및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등에 있어 사용자가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3년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자가 고용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대신 이들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고,

둘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특히 상법상 회사 등 영리조직 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청산 시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과 인건비·운영경비 및 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5시3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0항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손봉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손봉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는 일제강점기 불행했던 한일 관계로

인하여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서 즉각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조선왕조 의궤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에 반환한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등의 사례에서 보여 준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재의 원산지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지속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이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 전문가회의에서 촉구한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된 조선왕조 의궤 등 문화유산을 반환받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네스코정부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 결의안에서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5시37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1항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정병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에서 약탈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즉각 반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가 이러한 뜻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문화유산이므로 프랑스 정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에 의해 약탈된 우리 문화유산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며 약탈 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과 국제박물관협의회 전문가회의 원칙 등 약탈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관례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생한 소장품 도난 및 분실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규장각도서를 중국 문서로 분류했었을 뿐만 아니라 도서들의 가치나 내용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프랑스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외규장각도서를 즉각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프랑스 국민 간의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4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32항~제35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3.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4.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5.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병석 국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여 1983년부터 홀수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서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리며, 2011년 대회의 개최지가 2007년 3월과 4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관하는 아시아지역의 종합경기대회로서 1951년 인도 뉴델리 대회에서 시작되어 1954년 제2회 대회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014년 제17회 대회의 개최지가 2007년 4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각각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다음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06년 6월 30일 구성된 독도수호 및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06년 6월 30일 구성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역시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각각의 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1인으로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3일간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그 대응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또한 의원님들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활동으로는 민생법안 등 191건의 법률안과 8건의 결의안 등 모두 232건의 안건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국회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적 처리시한을 번번이 어기는 것은 고쳐져야 할 폐습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준수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가 입법적 불비와 교섭단체 간의 합의 미

흡으로 중요한 헌법기관장의 장기 공석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의사표시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은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일 뿐,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제약하거나 의회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다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앞으로 아름다운 의회문화와 전통을 수립해서 나가는 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주부터 임시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꼭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다시금 되살펴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근 태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김 중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환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인 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맹 형 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이 영 호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장 선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희 수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호 영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민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윤 성	이 은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한 화 갑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임 중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기권 의원(1인)

우 상 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중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최 재 천	한 화 갑	허 천	한 선 교
최 경 환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기권 의원(2인)

김영춘 차명진

(이원영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의
 원 210인, 기권 의원 2인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류근찬	맹형규	문희광	문희상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민병두	박기춘	박명자	박병석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박상돈	박성범	박순진	박승환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박영선	박재완	박기선	박찬석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박찬숙	박형준	배기성	배일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정두언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기우	이광철	이균현	이미경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미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기권 의원(1인)

김기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광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진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기선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성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기우	이광철	이균현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박세환 우윤근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봉
 이혜훈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찬성 의원(20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혜훈 임인배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 의원(5인)

김성조 김영덕 심재덕 안민석
 최규식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혁규
 김태년 김태환 김희정 김희석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류근찬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민병두
 맹형규 문희상 문희상 박성범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혜석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우제창 우제항 유필우 유정복
 이강래 이계안 이계진 이기우
 이방호 이성권 이은영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임인배 임인배
 장경수 전병현 정덕구 정의화
 정의용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조경태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회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기권 의원(2인)

송 영 선 원 희 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희 룡 유기 준 유기 흥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회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박 세 환 배 일 도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원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영호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은영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성조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영호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은영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용래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문석호	류문학	문희	문희상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성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황우여	황진하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 덕 규 김 성 조 선 병 렬 이 규 택
 이 명 규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체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주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고 광 성	고 권 경	고 권 선	공 권 영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김 무 성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김 정 훈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인 태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학 용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영 근	안 흥 준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덕 구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인 태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조 순 형	조 일 현	조정 식	주 승 용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규 성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용 규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용 희	이 원 복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기권 의원(1인)

김 동 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7인)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김 동 철	김 우 남	김 재 원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혁 규	김 효 석	노 영 민	맹 형 규	문 희	박 명 광	박 세 환	박 종 근	박 형 준	변 재 일	서 혜 석	송 영 선	심 재 덕	안 명 옥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희 룡	유 재 건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광 철	이 명 규	이 상 배	이 승 희	이 은 영	이 재 오	이 주 영	임 인 배	임 해 규	장 향 숙	정 갑 윤	정 병 국	
김 덕 규	김 명 주	김 성 곤	김 영 덕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춘 진	김 학 송	김 형 주	나 경 원	박 기 춘	박 성 범	박 재 완	박 찬 숙	배 일 도	서 재 관	송 영 길	신 학 용	안 경 룡	안 흥 준	엄 동 연	우 원 식	원 혜 영	유 인 태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계 진	이 낙 연	이 상 득	이 성 권	이 원 복	이 인 제	이 종 구	이 혜 훈	임 태 희	장 영 달	전 재 희	정 몽 준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흥 미 영 흥 재 형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이 윤 성 정 형 근 조 일 현 최 용 규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흥 미 영
 흥 준 표 흥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 영 선 이 방 호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7인)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진표 김태환 김형오 김희정 노현송 문석호 박근혜 박상돈 박영선 박찬숙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신기남 심재엽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인태 윤두환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병석 이성구 이영호 이은영 이재웅 이주영 임인배 임해규 장윤석 전재희 정두언 정의화 정청래 조경태 조일현 지병문 천정배 최병국 한광원 허태
 김춘진 김학송 김형주 나경원 류근찬 문학진 박기춘 박성범 박재완 박형준 변재일 서재관 송영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양형일 오제세 유기준 유재건 이경숙 이광철 이상득 이성권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임종인 장경수 장향숙 정갑윤 정몽준 정장선 정형근 조배숙 조정식 조진수 최구식 최연희 홍
 김충환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맹형규 문희 박명광 박세환 박종근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송영선 신학용 안경률 안영근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정복 윤호중 이경재 이근현 이미경 이상배 이승희 이원복 이인영 이종걸 이진구 임채정 장복심 전병헌 정덕구 정병국 정희수 조성태 주승용 차명진 최규성 최재천 홍
 김태년 김현미 김희선 노응래 문병호 민병두 박병석 박승환 박찬석 배기선 서병수 선병렬 신국환 심재덕 안명옥 안홍준 우원식 유승희 유필우 이강두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석현 이시중 이윤성 이인제 이종구 이혜훈 임태희 장영달 전여옥 정동채 정성호 정진석 제종길 주호영 채수찬 최규철 최천홍

홍창선 황진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6인)

강재섭 고진화 권경석 권철현 김기현 김덕룡 김무성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태년 김현미 김희선 노응래 문석호 민병두 박병석 박승환 박진태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송영선 안경률 안영근 엄호성 우원식 유승희 유필우 이강두 이계안 이근식 이병석 이성구 이영호 이은영
 강창일 고흥길 권선택 김광원 김낙성 김동철 김병호 김성조 김영선 김우남 김재원 김정훈 김태환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류근찬 문희 박근혜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서병수 선병렬 신국환 안명옥 안홍준 엄동연 우윤근 원희룡 유인태 윤두환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병석 이성권 이용희 이인기
 고경화 공성진 권영세 김교홍 김낙순 김명자 김석준 김애실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종인 김학송 김형주 나경원 류근찬 문희 박기춘 박성범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신기남 심재엽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제창 유기준 유재건 유원호 윤두환 이경숙 이광철 이명규 이상배 이승희 이원복 이인영
 고조홍 곽성문 김기춘 김덕규 김명주 김선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춘진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맹형규 문희상 박명광 박세환 박종근 박형준 변재일 서재관 송영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양형일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정복 윤호중 이경재 이근현 이방호 이석현 이시중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이혜훈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유기홍	유승희	유재건	유정복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정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이영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홍창선	황진하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기권 의원(3인)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김진표	문병호	이미경		임태희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유인태	차명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정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정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맹형규 진수희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정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우윤근	우제창	우제향	원희룡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홍창선	황진하			임태희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기권 의원(1인)
김덕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기권 의원(1인)

이영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정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현 송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흥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재 천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기권 의원(3인)

문 희 이 영 호 이 원 복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근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선
맹 형 규	나 경 원	노 영 민	노 현 송
문 희 상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박 명 광	박 병 석	민 병 두	박 근 혜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진	박 찬 석	박 영 선	박 종 근
박 회 태	배 기 선	박 찬 숙	박 형 준
서 병 수	서 상 기	배 일 도	변 재 일
선 병 렬	손 봉 숙	서 재 관	서 혜 석
신 기 남	신 중 식	송 영 길	신 국 환
심 재 엽	심 재 철	신 학 용	심 재 덕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경 룰	안 명 옥
안 승 조	안 형 일	안 영 근	안 홍 준
오 제 세	우 상 호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우 원 식	우 윤 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기 흥	유 승 희
윤 건 영	윤 두 환	유 정 복	유 필 우
이 강 두	이 강 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근 식	이 낙 연	이 광 철	이 규 택
이 방 호	이 상 득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성 구	이 상 배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원 복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인 제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중 구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혜 훈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태 희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장 윤 석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4인)

송영선 원희룡 이영호 이인기
 (권오을·이방호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의원 211인, 찬성 의원 207인, 기권 의원 4인임)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영호

기권 의원(1인)

김애실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성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반대 의원(5인)

곽성문 김재원 손봉숙 윤건영
이승희

기권 의원(6인)

김애실 박세환 이규택 이종구
정덕구 차명진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맹형규
민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상수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양형일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제창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운성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석현

(문석호 의원 버튼 미조작, 송영선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1인임)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운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권오을 김기춘 김덕룡 김선미 김애실 김영춘 김재원 김종률 김태년 김현미 나경원 맹형규 문희박 명광 박승환 박찬석 배일도 서혜석 송영선 신중식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우상호 원혜영 유승희 유필우 이강두 이계진 이명규 이상득 이성권 이영희 이인영 이종구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정동채 정의화 조성태 주호영 차명진

곽성문 권철현 김기현 김동철 김성곤 김양수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환 김형주 노영민 문병호 문희상 박병석 박영선 박찬숙 변재일 선병렬 신국환 신학용 안경률 안홍준 염동연 유기준 유인태 이경숙 이근현 이미경 이상배 이승희 이재오 이주영 임인배 장경수 전여옥 정두언 정장선 정희수 조순형 지병문 채수찬

권선택 김광원 김낙순 김무성 김성조 김영덕 김우남 김재홍 김진표 김학송 김희선 노웅래 문석호 민병두 박상돈 박재완 박희태 서상기 손봉숙 신기남 심재덕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재건 윤원호 이경재 이근식 이방호 이석현 이시종 이윤성 이재웅 이진구 임종인 장복심 전재희 정몽준 정진석 제종길 조일현 진수희 천정배

권영세 김교홍 김덕규 김석준 김송자 김영선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혁규 김희정 노현송 박근혜 박성범 박진 배기선 서재관 송영길 신상진 심재엽 안민석 양형일 오제세 우제창 유선호 유정복 윤호중 이계안 이낙연 이병석 이성구 이영호 이은영 이재창 이해봉 임채정 장영달 정갑윤 정병국 정청래 조배숙 주성영 진영최 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8인)
 김영주 박기춘 박세환 서갑원
 이광철 이상민 장향숙 주승용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
성결의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희상 문희상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선호 유승희 유필우 유기홍
 윤호중 이계안 이낙연 이병석
 이성구 이영호 이은영 이재창
 이해봉 임채정 장영달 정갑윤
 정병국 정청래 조배숙 주성영
 진영최 구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11인)

김낙순 문석호 문학진 박기춘
 박세환 심재엽 안홍준 이광철
 이상민 장향숙 주승용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

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회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

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주영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천	최철헌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철헌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광원			
기권 의원(12인)			
곽성문	김혁규	맹형규	심재철
안홍준	윤건영	이경재	이재창
이종구	이진구	장복심	차명진

○출석 의원(26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중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중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11인)

김 부 겸	김 영 숙	남 경 필	이 광 재
이 상 경	이 상 열	이 원 영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세 균	한 명 숙	

○출석 국무위원

환 경 부 장 관		이 치	범 수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출석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제2차관		장 인 태	
산업자원부제1차관		김 종 갑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김 태 랑	
---------	--	-------	--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진 영
 2006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6일간)
 (2006. 12. 7)

○의안 제출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7 김낙순·박기춘·염동연·강창
 일·양형일·강길부·문학진·장향숙·우윤
 근·이석현·손봉숙·강기정·이인영·이기
 우·박명광·이종걸·임종석·심재덕·원혜
 영·김희선·김효석·유재건·노현송·김부
 겸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이은영·이계안·우제창·강기
 정·장복심·김동철·정성호·이계경·박상
 돈·박명광·장영달·김명자·최성·민병
 두·조일현·선병렬·이경숙·김교홍·정봉
 주·양승조·이시중 의원 발의)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엄호성·이재용·안명옥·김재
 경·정진섭·김영숙·김정훈·김성조·박재
 완·유기준·윤두환·서병수·한선교·진
 영·이종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임태희·유선호·최인기·김정
 훈·나경원·정두언·김성조·신상진·이주
 호·이성권·정병국·진수희·김명주·박재
 완·김정권·김충환·주호영·김양수·김애
 실·남경필·이강두·이계경·박진·박형
 준·권영세·서갑원·강기정·신학용·이인
 영·문학진·최철국·김혁규·강창일·김태
 홍·김성곤·이영호·우윤근·염동연·양형
 일·김동철·지병문·주승용·신중식·이낙
 연·이상열·김효석·한화갑·김송자·이승
 희·채일병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
 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06. 12. 7 송영선 의원 외 41인 발의)

12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정화원·남경필·이성권·이성구·고경화·정종복·박형준·안명옥·권철현·장항숙 의원 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7 정화원·남경필·이성권·이성구·고경화·정종복·박형준·안명옥·권철현·장항숙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6. 12. 7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2006. 12. 7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7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이상 3건 2006. 12. 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 2006. 12. 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8 정두언·김재원·김재경·심재철·안상수·박재완·황우여·신학용·나경원·우윤근·고조홍·임태희·이상경·서상기·박명광·박승환·김충환·신상진·이계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양형일·강기정·김동철·강창일·염동연·류근찬·박기춘·우제항·최규식·원혜영 의원 발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0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이명규·김재원·박재완·권경석·김영선·곽성문·안상수·김성조·정갑윤·이상득·김무성·이윤성·임인배·배일도·윤건영·이상배·고조홍·엄호성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2. 22 정부 제출)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6. 11. 6 정부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8. 24 이윤성·황우여·이해봉·안상수·권오을·엄호성·김태환·곽성문·이시종·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 정부 제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3 정부 제출)

商標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6. 10. 27 정부 제출)

鑛山保安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8. 24 이윤성 · 권오을 · 남경필 · 윤두환 · 광성문 · 김태환 · 배일도 · 이명규 · 안명옥 · 신상진 의원 발의)

對外貿易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9 정부 제출)

輸出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06. 4. 7 최규성 · 최철국 · 김태년 · 광성문 · 한병도 · 김태홍 · 이상열 · 김교홍 · 오영식 · 이광재 · 지병문 · 배기선 · 서혜석 · 이경숙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갑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김용갑 · 광성문 · 김기현 · 김태년 · 김태홍 · 김학송 · 박순자 · 박재완 · 이계진 · 이병석 · 이상열 · 최규성 · 최철국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6. 4. 27 김기현 · 김명주 · 유기준 · 주성영 · 유정복 · 박순자 · 박찬숙 · 이인기 · 엄호성 · 진수희 · 김성곤 · 김재경 · 황우여 · 박재완 · 배일도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이병석 · 박세환 · 안택수 · 김재원 · 이상경 · 김영선 · 이근식 · 이성권 · 정문현 · 심재철 · 이해봉 · 정성호 · 박재완 의원 발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이병석 · 정문현 · 심재철 · 이성권 · 이근식 · 박세환 · 김재원 · 이상경 · 이해봉 · 안택수 · 정성호 · 박재완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006. 9. 11 우제항 · 강길부 · 강창일 · 김명자 · 김선미 · 김형주 · 노영민 · 박기춘 · 양형일 · 원혜영 · 조성래 · 최규식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6. 9. 27 조정식 · 홍미영 · 이원영 · 김영주 · 김태년 · 신상진 · 김재홍 · 제종길 · 김형주 · 이목희 · 우제항 · 우원식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0 이성구 · 황우여 · 신상진 · 이해봉 · 김종률 · 송영선 · 김학송 · 공성진 · 안상수 · 정동채 의원 발의)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05. 7. 19 정갑윤 · 박명광 · 김정훈 · 우제창 · 김명주 · 김재원 · 김혁규 · 김양수 · 안홍준 · 이광철 · 박재완 · 유승민 · 이해훈 · 김충환 · 배일도 · 이재오 · 이상경 · 김병호 · 최규성 · 이강두 · 김학송 · 박승환 · 김종률 · 심재엽 · 박찬숙 · 이시종 · 이계안 · 채수찬 · 이근식 · 허태열 의원 발의)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6. 8. 24 이윤성 · 권오을 · 남경필 · 심재철 · 윤두환 · 광성문 · 김태환 · 이명규 · 안명옥 · 신상진 의원 발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6. 11. 7 이시종 · 박찬석 · 노영민 · 신중식 · 이은영 · 최철국 · 김낙성 · 김혁규 · 한광원 · 김명자 의원 발의)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배일도 · 안명옥 · 고경화 · 이경재 · 정형근 · 김춘진 · 신상진 · 안홍준 · 유기준 · 김석준 의원 발의)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6. 9. 1 김영주 · 배일도 · 박상돈 · 김종

를 · 고진화 · 한선교 · 심재철 · 장복심 · 조정식 · 제종길 · 이목희 · 김형주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6. 6. 23 정부 제출)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4. 7 안명옥 · 정갑윤 · 정화원 · 서재관 · 유기준 · 이계경 · 이해봉 · 신국환 · 서병수 · 김충환 · 강성중 · 황우여 · 이성권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0 남경필 · 엄호성 · 임해규 · 신상진 · 이인기 · 이윤성 · 심재철 · 맹형규 · 김양수 · 김명주 · 정병국 · 차명진 의원 발의)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6 이명규 · 공성진 · 권경석 · 김영숙 · 박재완 · 신상진 · 이성권 · 이인기 · 이재웅 · 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2. 9 진영 · 공성진 · 권경석 · 권오을 · 김기현 · 김문수 · 김석준 · 김영덕 · 김영선 · 김희정 · 류근찬 · 맹형규 · 박근혜 · 박세환 · 박순자 · 박찬숙 · 배일도 · 서상기 · 신중식 · 안명옥 · 안상수 · 엄호성 · 유기준 · 유승희 · 이계경 · 이인기 · 이주호 · 이해봉 · 임해규 · 정성호 · 정의화 · 정진섭 · 황우여 · 황진하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6. 3. 23 우원식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문병호 · 문학진 · 신중식 · 우윤근 · 이목희 · 이은영 · 이호웅 · 장복심 · 장영달 · 장향숙 · 제종길 · 조일현 · 조정식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5. 2. 16 김영주 · 박영선 · 이경재 · 단병호 · 이덕모 · 우원식 · 장복심 · 김현미 · 공성

진 · 조정식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5. 3. 22 장복심 · 노영민 · 이은영 · 이호웅 · 김기석 · 노용래 · 한광원 · 광성문 · 우원식 · 제종길 · 정두언 · 한병도 · 조정식 · 장경수 · 이인영 · 최규식 · 박상돈 · 김정훈 · 홍준표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6 배일도 · 김재윤 · 민병두 · 박상돈 · 장영달 · 강기정 · 배기선 · 김영주 · 맹형규 · 정두언 · 제종길 · 우원식 · 우윤근 · 유인태 · 김태홍 · 이은영 · 선병렬 · 송영길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3 정두언 · 정갑윤 · 양형일 · 안병엽 · 신상진 · 맹형규 · 이인기 · 우윤근 · 황우여 · 안홍준 · 임태희 · 배일도 · 안상수 · 박재완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인사청문요청안

(2006. 11. 28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06. 12. 4 송영선 의원 외 41인 발의)

12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제263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2007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 주요법안처리
요 구 자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외 264인

(2006. 12. 7)